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용자상담 및 신청서

20 년 월 일

본인확인및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귀행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주 소		
			(전 화)	(☎)	
사업자번호			설립일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금액	금 원		기업규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개인사업자 □기 타	
여신과목		상환기일	취급후 년 개월	업 종	
자금용도		상환자원 및 방법		주요제품	

사업실적	전 기	금기예상	재무현황(전기)		기타 특기사항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경상이익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순 부 채	백만원	

	여신과목	한도금액	잔 액	여신기일	취급의견 :
여신내용	신청분				
	합 계				

	종 류	감정가	유효담보가	보존방법	
담보내용					
	유효담보가 합계		담보비율	%	

연대보증인	성 명	직장명(직위)	차주와의 관계	실재산	나이	보증종류	전화

융자가부 결정결과	가 · 부	부결사유	상담자	직 위	
	통지일 :			성 명	

5-06-0393 (7-1)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수 입 인 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 포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20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20 년 월 일
이자율 등	□ 고정	□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변동	□ 기준금리( ) + ( )% □ 기타(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 )%로 적용합니다. □ 기타 ( )		
약정한도수수료	□ 여신한도 약정금액 x (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 x 운용기간/365(외화여신은 360일)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2. 이 약정서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로 하여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5-06-0393 (7-2)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2.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4.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5. 정책자금대출을 기일 전 상환하는 경우
6.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제4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감액 · 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약정한도수수료

① 한도거래 여신을 약정할 때 제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도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제1조의 한도금액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개월수(1개월 미만 절사)에 대하여 약정한도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8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한도거래 여신의 경우 제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1조에서 정한 약정한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의「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중 큰 금액)}

2. 제1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한「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3.「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 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2.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제1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④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 ·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⑥ 당좌대출의 경우, 제6조에 의한 감액 · 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 · 수표가 지급거절되더라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⑦ 은행은 어음 ·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 · 수표를 여신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1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 · 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 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5-06-0393 (7-3)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

제13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 · 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 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 개서 · 갱신 · 분할 · 병합 · 증액 · 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 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 기 · 번호 계좌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수익자	금 액 (계약액)	20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4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 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비율	%	%	%	%	%
( )비율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 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6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추 가 약 정 서 (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① 제출서류

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서(또는 현금입금 신청서)

나.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다.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

②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서류를 귀 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의 거래처(구매기업)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또는 현금입금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제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입금계좌 지정)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계좌번호 : 예 금 주 :

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이하 "거래처"라 합니다)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 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 귀 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귀 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5조 (대출의 제한)

①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 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 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원 약정서"상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거래처의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면 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상환 의무)

본인의 거래처와 귀 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CMS, Real Time Banking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5-06-0393 (7-5)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

추 가 약 정 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귀 행과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약정한 동 대출금의 여신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 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3. 거래처(구매기업)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5-06-0393 (7-6)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기업용)

(포괄계약)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갑"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을"이라 합니다)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_____(이하 "병"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을의 병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갑이 을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갑과 을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을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과 병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대상채권"이라 합니다)전액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 위	갑과 을 당사자 사이에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기 본 계 약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을과 병이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 (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병과 갑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

제3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① 개별 승낙방식인 경우

1. 을이 병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 · 확정되는 경우 병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갑은 을을 대리하여 갑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병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을은 제1항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갑은 병으로부터 교부 송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② 포괄 승낙방식인 경우

1. 을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갑에게 수여합니다.
2.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병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3. 갑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포괄 승낙방식용) 원본을 병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을의 진술 및 보증)

① 을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병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병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을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5조 (변제충당 및 정산)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병에게 행사함에 따라 병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갑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을의 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을이 지정하는 을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을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대상채권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 사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물품등의 하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대상채권 대금을 병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7조 (특약사항)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약정서(여신거래 약정서(1), 추가약정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 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 인	(인)

20 년 월 일

채 권 양 수 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_____ (인)

주 소

본인(채무자 겸 채권양도인) _____ (인)

주 소

업 체 코 드 : _____

중 심 업 체 명 : _____

중 심 업 체 사 업 자 번 호 : _____

5-06-0393 (7-7) / (2012. 12. 개정)
(보존년한 : 완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약관-12-184(2012.12.07)

하나은행